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 4. 20 선고 2020가단5716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 담당변호사 김대일
변 론 종 결 2021. 3. 23.
판 결 선 고 2021. 4. 2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2. 16.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7. 2. 16.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

원고는 2016. 2. 11.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가 D은행에서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금액을 161,500,000원, 보증기한을 2017. 2. 15.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B는 C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한편 B는 C가 D은행에 대해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도 연대 보증하였다. 이후 원고와 C, B는 보증금액을 148,000,000원, 보증기한을 2019. 2. 14.로 각각 변경하였다.

C는 2018. 6. 19.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8. 9. 12. D은행에 150,587,00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B와 피고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은 피고의 남편이자 B의 부친인 E이 1998. 7.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E이 2017. 2. 16. 사망하여 피고와 B를 비롯한 자녀들 4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가 소유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2017. 6. 1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

다. 2017. 2. 16.경 B의 무자력

1) 적극재산: ① 이 사건 아파트 중 1/11 지분1) 가액 8,181,818원2) , ② 전남 영암군 H 전 1,587㎡ 공시지가 11,839,020원3) 합계 28,202,656원

2) 소극재산: D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185,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D은행에 대한 대위변제자로서 민법 제481조에 따른 변제자대위를 원인으로 D은행의 B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는바, 원고는 보증인으로서 민법 제481조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고,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자취소권도 모두 변제자에게 이전하므로, 원고는 D은행의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4) 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 사건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E과 피고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취득하여 거주해 온 주거이기 때문에 피고 단독소유로 한 것일 뿐이고, B의 채무초과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었으며,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에는 C가 대출금을 연체하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것이 더 심화된다는 사정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았고, B나 그 처인 G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다액의 대출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B의 무자력이 심화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다만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과 피고가 부부로서 수십 년의 혼인기간 중 이 사건 아파트를 남편인 E 명의로 취득하여 계속 거주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와 E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공유재산인데 다만 그 명의만 E으로 해 두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은 피고가 E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E의 나머지 1/2 지분만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피고에게 귀속된 B의 상속지분은 $1/11 (= 1/2 \times 2/11)$ 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1/11 지분에 관하여 2017. 2. 16.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B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수정

1) 아래 2.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속지분은 1/11이다.

2) $(230,000,000\text{원} - F \text{ 주식회사 근저당권(채무자 G)의 피담보채무 약 } 140,000,000\text{원}) \times 1/11$

3) $7460\text{원} \times 1,587$ (실거래가에 관한 자료는 없으나, 4~5배를 하더라도 채무초과에는 영향이 없다)

4)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사해행위 시까지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는 없으므로 D은행의 연대보증채권의 변제기 도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